

# 「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2. 29(수) 장문혁 의원 외2 인

나. 회부일자 : 2012. 3. 8(목)

다. 상정일자 : 2012. 3. 9(금) 제1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 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장문혁 의원)

-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림으로써 이들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갖게 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.
- “병역명문가” 및 “3대가족”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  - “병역명문가”란 3대가족 이상 모두가 현역 복무를 마친 가족을 말함
  - “3대가족”이란 조부 및 부·백부·숙부 그리고 본인,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말함
- 우대(안 제6조)
  -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군에서 운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시설을 입장 및 사용할 때에는 입장료와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림으로써 이들이 사회에서 존경 받고 긍지를 갖게 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 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
  -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면서
  -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  - 병역명문가가 군에서 운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시설을 입장 및 사용할 때에는 입장료와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 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주위로부터 존경 받고 긍지를 갖을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병무청 훈령 제928호 『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』에 근거하는 등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부